검토사항 적합 여부 중소기업 기준 [서식5]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예 아니요 업종 기준 조특법§7①1호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작물재배업, 축산업, 어업,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도소매업, 출판업, 방송업, 전기통신업, 연구개발업, 광고업, 전문디자인업 등 열거된 업종에 한정 예 아니요 소기업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｢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｣ [별표3] 규모기준 이내인지 여부 예 1번 이동 아니오 2번 이동 감면율 1번 소기업 수도권 내 도매 및 소매업, 의료업,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10% 알뜰주유소\* 20% 제조업 등 20% 수도권 외 도매 및 소매업, 의료업 10%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5% 알뜰주유소\* 20% 제조업 등 30% 2번 중기업 수도권 내 지식기반산업, 알뜰주유소\* 엔지니어링산업, 전기통신업, 연구개발업, 컴퓨터 프로그래밍･시스템통합 및 관리업, 영화･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, 전문 디자인업,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, 광고물작성업,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, 방송업, 정보서비스업, 서적･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, 장착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(자영예술가는 제외),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10% 수도권 외 도매 및 소매업, 의료업 5%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.5% 알뜰주유소\* 15% 제조업 등 15% 감면대상 소득 이자수익･유가증권처분이익･유가증권처분손실 등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하지 않는 소득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예 아니요 한도액 감면한도액을 초과하여 적용하지 않았는지 여부(알뜰주유소 감면분 제외) 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⇒ 1억원 -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×5백만원 ② 그 밖의 경우 : 1억원 예 아니요 \* ’22년~’23년 한시적으로 적용